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3일, 박정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6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현의원)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